

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박춘선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
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3265호 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

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정의되어 있는

용어를 조례에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,

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

내용으로 우리 국은 원안에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